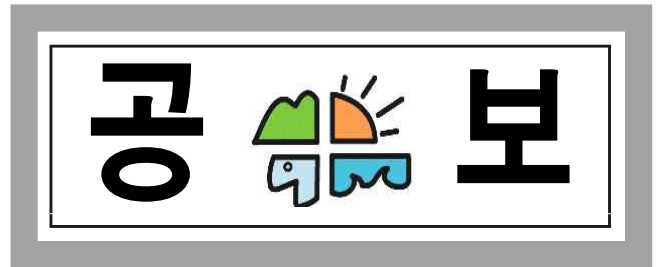
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758호 2013년 3월 18일(월)

공 고

○ 속초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..... 2

회 란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기 획 감 사 실 (전화 : 639-2223, FAX : 639-2106)

속초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속초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」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년 3월 18일

속 초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속초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

2.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

상위법에서 규정한 명칭 및 관련 근거법이 조문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내용을 일치시켜 적법성을 기함으로써 원활하게 복지행정을 추진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시설 명칭 변경하고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(안 제2조)
- 나. 노인복지관의 관장사업을 현실에 맞게 변경(안 제3조)
- 다. 시설의 위탁운영 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고 재위탁 규정을 삭제함(안 제6조)
- 라. 노인복지관 이용료 면제대상자를 확대함(안 제9조)

4. 자치법규안 : 붙임

5. 의견제출

가.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(참조: 노인복지담당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) 주소·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다. 의견제출할 곳 : 우217-030/ 속초시 중앙로 183 (중앙동469-6)

속초시청 여성가족과 노인복지담당(전화: 033-639-2951, FAX: 033-639-2739)

라. 의견제출 방법: 서면, 전화, FAX, 시 홈페이지, 직접방문 등

6. 기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여성가족과 노인복지담당(전화: 033-639-2951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속초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속초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속초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”를 “속초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속초시 노인종합복지회관”을 “속초시 노인복지관”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명칭 및 위치) ① 명칭은 속초시 노인복지관(이하 “복지관”이라 한다)이라 칭한다.

② 복지관은 속초시 수북로 42(교동 979)에 둔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업무) 복지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맡아 처리한다.

1. 노인사회교육사업
2. 노인일자리 사업
3. 노인상담사업 및 건강증진사업
4.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및 자원봉사
5.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
6.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사업

제6조제2항 중 “위탁기간은 3년으로”를 “위탁기간은 5년 이내”로 하고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조 제3항 중 “예산의 범위 내에서”를 “예산의 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”을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

법」 또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“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년 1회”를 “한 차례”로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“명”을 “명령”으로 하고, 같은조 제2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, “명할 수 있다”를 “명령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승인을 얻어야 한다”를 “승인을 받아야 한다”로 한다.

제12조 중 “속초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”를“ 속초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”로, “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”를 “속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”로 한다.

제4조 · 제5조(제1항) · 제6조(제1항 · 제3항), 제7조(제3호 · 제4호) · 제8조(제1호 · 제2호 · 제6호) · 제9조(제1항) · 제11조 중 “복지회관”을 “복지관”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탁 운영하고 있는 자의 위탁기간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이 조례는 「노인복지법」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의 종합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들의 복리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<u>속초시 노인종합 복지회관</u>을 설치하고,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이 조례는 「노인복지법」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의 종합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들의 복리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<u>속초시 노인 복지관</u>을 설치하고,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명칭 및 위치)①명칭은 속초시 노인 종합복지회관(이하 “복지회관”이라 한다) 이라 칭한다. ②복지회관은 속초시 교동 979 번지에 둔다.	제2조(명칭 및 위치) ① 명칭은 속초시 노인복지관(이하 “복지관”이라 한다) 이라 칭한다. ② 복지관은 속초시 수복로 42(교동979)에 둔다.
제3조(업무)복지회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관장한다. 1. 노인종합상담지도 및 노인일자리사업 2. 노인사회교육 및 후생복지사업 3. 노인건강증진사업 4. 보건·재활증진사업 5. 재가노인들의 여가문화 창달 6.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	제3조(업무)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맡아 처리한다. 1. 노인사회교육사업 및 후생복지사업 2. 노인일자리 사업 3. 노인상담사업 및 건강증진사업 4.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및 자원봉사 5.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6.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사업
제4조(시설)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복지회관에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1. 사무실 및 회의실 2. 사회교육실 및 상담실 3. 체력단련실 4. 물리치료실 5. 기타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	제4조(시설)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복지관에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1. 사무실 및 회의실 2. 사회교육실 및 상담실 3. 체력단련실 4. 물리치료실 5.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

제6조(위탁운영) ① 시장은 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성과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.

제9조(비용의 수납) ① 복지회관의 사업수행은 노인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수탁자는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. 다만,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으며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는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.

② 생략

제10조(지도 및 감독)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년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과 시설물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,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,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.

제6조(위탁운영) ① 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.

제9조(비용의 수납) ① 복지관의 사업수행은 노인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수탁자는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. 다만,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으며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또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.

② 현행과 같음

제10조(지도 및 감독)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한 차례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과 시설물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, 그 밖에 관계서류를 검사 하게 할 수 있으며,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령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령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.

제11조(자체운영규정) 수탁자는 복지회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2조(준용)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속초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, 「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」 및 「사회복지사업법」을 준용한다.

제11조(자체운영규정)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2조(준용)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, 「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및 「사회복지사업법」을 준용한다.